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



[시행 2023. 12. 12.] [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]

식품의약품안전처 (혁신진단기기정책과) 043-719-3739

제1조(목적) 이 영은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(임상적 성능시험기관)**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 - 1. 「보건환경연구원법」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
 - 2.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
 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·검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 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(常勤)하는 기관
- 제3조(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및 전문인력의 숙련도에 대한 평가업무를 진단검사의학・병리학 또는 유전자검사 등에 대한 조사・분석・연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4조(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)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, 해당 과징금의 금액,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.<개정 2023. 12. 12.>
 -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, 지체 없이 그 수납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.
- **제5조(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)**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「행정기본법」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[전문개정 2023. 12. 12.]

- 제6조(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(제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「행정기본법 시행령」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)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.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해야한다. <개정 2023, 12, 12, >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**제7조(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)**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해촉(解囑)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조사·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 이내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・심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・검토하게 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- **제8조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**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・심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 - 5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 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
 - 6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·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·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조사·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·심의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5.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
- 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.
 -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·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의 회의 출석이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회의 운영세칙)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.
- 제12조(기술지원 사업의 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지원 사업을「의료기기법」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(이하 "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"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- 제13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
 - 1.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제조업허가 및 그 허가 여부 통지
 - 2.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변경허가, 변경보고 및 변경허가 여부 통지
 - 3.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업허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수입업허가 여부 통지
 - 4.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업허가의 변경허가, 변경보고 및 변경허가 여부 통지
 - 5.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・검사・질문・수거
 - 6. 법 제17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검사명령
 - 7.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・수입・판매의 금지 및 그 업무의 정지명령
 - 8.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
 - 9.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청문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.
 - 1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
 - 2.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, 변경신고 및 변경보고
 - 3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
 - 4.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의 변경인증, 변경신고 및 변경보고
 -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제1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"범죄경력정보"라 한다)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·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 2022, 12, 20.>
 - 1. 법 제5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, 제조허가, 제조인증 및 제조신고 등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8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허가, 변경인증, 변경신고 및 변경보고 등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1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수입업허가, 수입허가, 수입인증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경허가, 변경인증, 변경신고 및 변경보고 등의 사무를 포함한다)
 - 5. 법 제12조에 따른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 및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무
 - 6. 법 제17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검사명령에 관한 사무
 - 7.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·수입·판매의 금지 및 그 업무의 정지명령 에 관한 사무
 - 8. 법 제19조에 따른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그 업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
 - 9. 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
 - 10.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

제15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부칙 <제33913호,2023. 12. 12.>(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 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